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하여



글_조의원(한국화장실문화협회 이사)

아래 내용은 2001년 3월2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본 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가칭)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본 협의회 이사 겸 산본연구소 조의원 소장이 발표한 자료를 지면관계상 요약하여 2회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원문은 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 편집자)

1. 머리말

한국 화장실(문화)의 발전은 이상하게도 중요 스포츠 행사나 국제행사를 기점으로 하여 조금씩 성장과 도약을 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실 발전의 유년기(1990년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행정이 앞장을 서서 화장실문화를 이끌어 주었고, 1999년 8월 한국화장실문화 협의회의 발족을 시발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 민간단체가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관이 합동이 되어 화장실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성장기) 까지는 양과 질적으로 계속 성장, 정점을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는 성숙기로 접어들어 행정보다는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민" 중심의 성숙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성장기 기간 중, 편안한 성숙기를 맞기 위한 몇 가지 유지관리 기준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유지관리의 중요성

아무리 비용을 들여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충분한 유지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용자가 사용을 회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은 곧 흉물로 변하여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다시 손을 보게 될 때에는 예상치 못한 자금과 노동력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기에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설계당시부터 이용상의 편의성과 유지관리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건축되어 진다면 오래도록 이용자로 부터 사랑 받는 화장실이 될 것이다.

3. 유지관리가 잘되기 위한 제언

이제 성장기의 정점을 맞고 있는 화장실(문화)이 계속 잘 유지관리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유지관리의 지침 등 기술적 측면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시민 의식의 제고가 뒤따라 준다면 유지관리 시스템은 무척 쉽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방향은?

1) 제도적인 측면(법률적인 측면)

가) 화장실관련 법규의 통합·제정 : 현재 30여 가지 법률 등에 분산 표기되어 있는 화장실 관련 법규를 통합,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정비·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범위도 정하여 지자체의 장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함.

나) 화장실관리 부서의 명칭통일 및 업무정리 : 법률적 근거가 애매모호 하여 화장실 업무를 관장하는 지자체 쪽의 조직체계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고, 업무의 범위도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또한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른 경우도

설계당시 부터 이용상의 편의성과 유지관리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건축되어 전다면 오래도록 이용자로 부터 사랑받는 화장실이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 잘 지어 놓은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충분한 유지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용자가 사용을 회피할 것이다.

있어 일관된 관리가 어렵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부서의 명칭을 "화장실과"로 통일하고, 업무의 한계도 분명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

다) 관리방법의 개선 : 또한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충분치 못한 대우로 고용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도 있어 책임감이 부족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관리용역사"에 의한 관리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장소에 따라 커피숍, 편의점, 기념품점을 병설,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화장실의 도입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기술적 측면(유지관리의 기준제정)

현행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좀더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유지관리 기준으로 재정하였으면 한다.

가. 유지관리 실명제 도입 : 아래 예시(홈페이지 참조)와 같은 실명제 표시(안)를 화장실 입구에 게시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나. 유지관리를 위한 3대 기준 제정

가) 일상청소(점검도함)

일상사용으로 지저분해 지거나 장난기 등으로 지저분해짐에 대하여 행하는 청소(매일1회 이상), 이때 점검을 하면서 설비나 건축물의 잘못된 점과 지저분함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을 체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일상청소는 지정된 일반 작업자가 한다. **작업내용은?**

- ①작업준비, 큰 쓰레기를 줍는다.
- ②세면기 및 주변 벽을 청소한다.
- ③소변기 및 주변 벽을 청소한다.

- ④대변기부스를 청소한다.
- ⑤바닥을 청소한다.
- ⑥손잡이, 선반, 비품을 닦는다.
- ⑦벽면, 파티션을 청소한다.
- ⑧건물의 외부를 청소한다.
- ⑨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한다. (작업자가 1차 점검한 것을 책임자가 확인 정리하여 정기청소 또는 전문적 유지관리 시 활용한다 – 점검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나) 정기청소

서서히 쌓여가는 지저분함과 높은 장소 및 옥외의 지저분함 등에 대하여 행하는 청소(매월 1회 이상), 정기청소는 건물별, 지역별, 부문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 용역사를 활용한다. **작업내용은?**

- ①대변기에 쌓여있는 지저분함을 청소한다.
- ②소변기에 쌓여있는 지저분함을 청소한다.
- ③파티션을 청소한다.
- ④배수시설을 청소한다.
- ⑤조명기구를 청소한다.
- ⑥환기팬, 기구를 청소한다.
- ⑦창문, 창살의 먼지를 청소한다.
- ⑧톱라이트를 청소한다.
- ⑨외부를 청소한다.
- ⑩홈통을 청소한다.(옥상)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